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김인제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경선, 김제리, 박상구,
김화숙, 고병국, 임종국,
이승미, 김정태, 봉양순,
최기찬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 30537호, 2020. 3. 17. 시행)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범위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로 정함(안 제3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중 “자율”을 “소규모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”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(이하 “기존주택”이라 한다)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)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”란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조(소규모----- --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”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.</p>